

1. 개정이유

최근 성수기·연휴 기간 중심으로 숙박요금 과다 징수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 숙박요금표 미게시 및 게시요금 미준수에 대한 1차 처분은 그 수위가 경고·개선 명령에 그쳐 제재 실효성이 매우 낮음.

또한 숙박 계약 체결이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요금표 게시 의무가 현장(접객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숙박 요금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숙박영업자의 숙박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온라인까지 명확히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강화하여 숙박요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숙박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여 온라인을 통해 숙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온라인에도 숙박요금표를 게시 ([별표4] 제1호라목 (1))
- 나. 숙박요금표 미게시 또는 게시요금 미준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별표 7] II. 개별기준의 제1호라목 4))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라목 (1) 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숙박영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 게시하고, 접객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의 방식으로 이용자와의 숙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숙박영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다)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별표 7 II. 개별기준의 제1호라목에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업소내 숙박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 업 장 폐쇄명령
------------------------------	------------------	------------	-------------	---------------

별표 7 II. 개별기준의 제1호라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접객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 업 장 폐쇄명령
--	------------	-------------	-------------	---------------

다른 전자상거래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의 방식으로 이용자와의 숙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	--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별표 7. II. 개별기준의 제1호라목 4)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7. II. 개별기준의 제1호라목 4)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별표 4 제1호라목 (1)을 위반하여接客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숙박요금과 다른 요금을 받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는 별표 II. 개별기준의 제1호라목 4)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